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63
----------	------

제출연월일: 2026. 3. 2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유사·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일몰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일몰의 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제6조)

○ 일몰의 대상 시책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우수시책으로 규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견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제28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7945호, 2026. 2. 25.)

라. 입법예고: 2026. 2. 23. ~ 3. 16. (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규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담당 실·국·소의 장이 결정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정으로 인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최영재
- 연락처: (052)290-3063